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장 용 대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0년 11월 1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 1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“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과 그 등급 구분”을 시·도 조례로 정하도록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이 개정(2008. 9. 10.)됨에 따라
- 현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과 그 등급을 규정하고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 구분표 삭제(제2조)
 - 의사인 의무직렬공무원(전임계약직 포함)에게 지급
92. 11. 20. 개정 이후 현재까지 지급대상자(정·현원) 없음
-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삭제(제3조)
 - 분뇨·하수·폐수·쓰레기처리업무,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·납골당의

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.

94. 2. 18. 신설이후 현재까지 지급대상자 없음

- 특수지근무수당지급 대상지역과 그 등급을 규정(안 제2조)
 -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, 백운면 덕동리,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(별표)

4. 검토의견

이번에 전부개정하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이 개정(2008. 9. 10.)됨에 따라 “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과 그 등급 구분”을 규정하고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

주요내용으로는

-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 구분표를 삭제(제2조)하고
-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를 삭제(제3조)하고
- 안 제2조에서 특수지근무수당지급 대상지역과 그 등급을 규정함에 있어 별표를 수정하였음.

금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의 개정(2008. 9. 10.)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, “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과 그 등급

구분”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나,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이 2008년 9월 10일에 개정되었음에도 2년이 지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.

붙임 :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. 끝.